

**보도자료**

2012년 1월 12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 최영진 과장(750-2610)  
조사기획총괄과 조민영 사무관 (750-2613) my517@kcc.go.kr

##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등을 위한 방송법령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금지행위 및 경쟁상황평가제도 도입, 방송분쟁조정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고시 등이 1월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상파·SO·PP 등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이 시행된다. 그동안 방송시장은 사후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방송시장에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11.7.14 공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의 시행일(12.1.15)을 앞두고 사후규제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의 행위가 금지된다.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다시 24가지로 세분되어 규정되었다(붙임 세부유형 참고).

- △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중단·거부 등
- △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 △ 부당한 시청자 차별
- △ 이용약관 위반, 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 △ 시청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용

방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주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지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경쟁상황평가제도는 시장의 구조, 사업자 행위 등과 관련된 지표를 수집하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제도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방송시장과 IPTV시장의 경쟁상황을 함께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방송 및 IPTV시장에 대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그 밖에 방송분쟁 조정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방송분쟁 조정 대상은 방송사업자간의 분쟁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IPTV 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IPTV콘텐츠의 수급과 관련된 분쟁, 방송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등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되었다. 끝.

## < 방송법상 금지행위 세부유형 >

유형 (법)	세부유형 (시행령)
I. 채널 · 프로그램 제공, 필수설비 접근 거부, 채널편성 변경 등	1.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2. 채널을 제공하면서 채널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4.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5.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로서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이하 “필수설비”라 한다)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계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필수설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7. 필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필수설비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8. 채널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 편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
II.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9.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10.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III. 방송시청의 방해 등	11.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12.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3. 단체계약 체결을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한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
	14. 과도한 이익제공 또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IV. 부당한 시청자 차별	15. 거짓 고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6.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7. 장기, 다량, 가입전환 또는 가입미전환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
V. 이용약관 위반 등	18. 방송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
	19. 결합판매시 현저하게 유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부당하게 시청자 차별
	20.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 제공
VI. 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21.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 청구
	22.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제공
기 타	23.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24.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I.~VI.까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 금지행위의 기준을 고시 할 수 있음	